

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

지배구조 내부규범



THE REAL LIFE
COMPANY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목적

이 규범은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지배구조법”) 제 14 조에 따라 AIA Life Insurance Co. Ltd. (이하 “회사”이라 한다)이 주주와 투자자, 보험계약자, 그 밖의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구성과 운영,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, 임원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, 임원 성과 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경영 승계 등과 관련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(이하 “지배구조내부규범” 또는 “이 규범”이라 한다)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정의

이 규범에서 사용된 용어는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의미를 갖는다.

제 2 장 이사회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

제 1 절 이사회와 구성현황

제 3 조 이사회와 구성 및 선임

- ① 이사회는 이사 3 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 사외이사는 3 명 이상이어야 하며,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.
- ② 이사회가 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1 항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4 조 이사회 의장

-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며 그 임기는 익년도 정기주주총회까지로 한다. 의장의 유고 등으로 새로 선임된 의장의 임기도 이와 동일하다.

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 및 주재하고 이사회가 활성화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
이사회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 및 주재하거나 출석이사의 과반수 투표로 의장을 선임한다.

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,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

2.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,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 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

3.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

④ 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 3 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 2 절 이사의 자격요건

제 5 조(이사의 자격요건)

① 이사는 보험업법,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,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(단, 직무정지, 업무집행정지 또는 문책 경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)에는 그 직을 잃는다.

② 이사는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으며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.

③ 사외이사는 보험업법,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,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(단, 직무정지, 업무집행정지 또는 문책 경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)에는 그 직을 잃는다.

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

1. 사외이사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금융, 경제, 경영, 회계 및 법률 등 관련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
2.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
3.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
4.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

제 3 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

제6조(이사회 결의 및 보고사항)

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.

1.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정관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및 변경, 개폐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해산·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
5.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7. 대주주·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
8.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 안건에 관한 사항
9. 자본금 및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
10. 중요 계약에 관한 사항
11.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에서 이사회 심의·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

②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이사회 결의 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
 2.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
 3. 관련 법령 및 이사회 규정 등 내부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
 4. 기타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제 1, 2 항의 심의·의결 및 보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7조(이사회 권한의 위임)

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8조(이사의 권한과 책임)

-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, 직무상 얻어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이사는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 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 등 활동을 위해 법률·회계·경영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,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장된 업무를 수행한다.
- ⑤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의사결정에 참여하며,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.

- ⑥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⑦ 이사가 본조 및 법령이나 정관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해태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회사에 대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.

제 4 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

제9조(이사 선임의 기준 및 절차)

- ①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. 다만 사외이사, 대표이사, 감사위원은
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.
- ②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의최종 결산기에
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.
- 대표이사의 임기는 3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- 이사의 임기는 3 년 이내의 범위로 한다.
- 사외이사의 임기는 3 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3 년 이내로 한다.
- 사외이사는 연속하여 6 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.
- ③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사외이사가 연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
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.

제10조(이사직의 퇴임의 기준 및 절차)

-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.
1. 임기의 만료
 2. 의원 사직하는 경우

3. 관련 법령 및 정관, 회사 규정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4.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사실 또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등 이사로서 신분을 유지하는데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된 경우

② 이사의 퇴임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시주주총회 또는 차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단, 결원이 발생한 경우라도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구성요건을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5 절 이사회 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

제11조(이사회 의 소집절차)

① 회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 회,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.

② 이사회 의장, 이사 과반수,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, 대표이사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. 대표이사가 이사회소집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의장 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 일 전에 회의일시, 장소 및 소집목적 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자료와 함께 각 이사에게 모사전송, 전보,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(인터넷 E-mail 등) 등으로 통지한다.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위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12조(의결권 행사방법)

① 이사회의 의결은 관련 법령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② 이사회는 대한민국 내외의 어느 곳에서도 개최될 수 있으며,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출석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6 절 이사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

제13조(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)

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이사회의 운영 및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. 필요한 경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규정과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의한다.

② 이사회는 제 1 항에 따라 심의한 평가결과를 이사회의 운영 및 사외이사 재선임에 참고한다.

③ 위 평가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 3 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

제 1 절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

제14조(위원회의 종류와 구성)

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고 상시적으로 운영한다.

1. 임원후보추천위원회
2. 감사위원회
3. 위험관리위원회

4. 보수위원회

- ②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감사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, 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한다.
- ④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15조(임원후보추천위원회)

-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임원(사외이사, 대표이사, 감사위원을 의미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)을 선임함에 있어 그 후보를 추천한다.
-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.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.
- ③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3 년으로 한다.
-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

2. 기타 임원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일을 정하고 그 7 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.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⑥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 33 조 제 1 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 단, 해당 후보가 지배구조법 기타 관련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⑦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⑧ 위원회의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따른다.

제16조(감사위원회)

①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 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.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이사회 의결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3 년으로 한다.

③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
2.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
3. 감사보고서의 작성, 제출
4. 임시이사회 소집 청구
5.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
6.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및 내부 감사업무 담당부서 설치, 관리 등
7. 내부 감사업무 담당 임원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
8. 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
9. 감사업무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
10. 기타 관련 법령, 정관, 회사 규정에서 정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위원회는 연 4 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 소집할 수 있다.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일을 정하고 그 7 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.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⑤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⑥ 기타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.

제17조(위험관리위원회)

-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.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.
- ② 위원장은 이사회 의결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3 년으로 한다. ③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1.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
 2.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허용한도의 설정
 3.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
 4. 위험관리기준의 제·개정
 5.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
 6. 위험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
 7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④ 위험관리위원회의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다.

제18조(보수위원회)

- ① 보수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.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.
- ② 위원장은 이사회 의결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3 년으로 한다. ③ 보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1. 임원(사외이사, 감사위원,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)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 방식
 2. 제 1 호의 자에 대한 보수체계의 설계 · 운영 및 그 적정성 평가
 3.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
 4. 보수 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관련 사항

5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④ 보수위원회의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수위원회규정에 따른다.

제 2 절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

제19조(운영실적 등의 평가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연간 활동내역을 기초로 구성, 운영,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.
- ② 제 1 항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주체, 방법, 절차, 지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③ 이사회는 평가결과 및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 4 장 임원에 관한 사항

제 1 절 임원의 자격요건

제20조 (임원의 자격요건)

- ① 본 장에서 "임원"이라 함은 지배구조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라 이사, 감사위원,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의미한다.
- ② 임원은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(단, 직무정지, 업무집행정지 또는 문책경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)는 그 직을 잃는다.

③ 준법감시인은 제 2 항의 임원으로서의 자격요건 외에 지배구조법 제 26 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, 준법감시인이 된 후에 지배구조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그 직을 잃는다.

④ 위험관리책임자는 제 2 항의 임원으로서의 자격요건 외에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3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,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후에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3 항 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그 직을 잃는다.

제 2 절 임원의 권한과 책임

제21조(대표이사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)

-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, 이사회 결의 사항을 집행하고 이사회가 정한 방향에 따라 회사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.
- ③ 제 8 조 제 7 항의 책임은 본조에 준용한다.

제22조(감사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준수사항)

-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.
 - 1. 감사를 목적으로 한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
 - 2.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
 - 3.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
 - 4.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
-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.
 - 2.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, 도용할 수 없다.

3.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감사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.

제23조(업무집행책임자의 권한과 책임)

- ① 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고, 대표이사가 부여한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업무 일체를 관장하며 담당직무에 상응하는 전결권을 행사한다.
- ② 업무집행책임자는 담당 직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며 이사회, 이사회 내 위원회 및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3 절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

제24조(임원의 선임)

- ① 정관 및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임원은 대표이사가 선임하며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다.
- ② 대표이사는 임원 선임 시 지배구조법 및 관련법령상 임원 결격사유가 없고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-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책임자 중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9 조에 따라 경영전략 수립 등 전략기획 업무, 재무·예산 및 결산 회계 등 재무관리 업무,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위험관리업무 등을 집행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임면한다.
- ④ 정관 및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임원의 임기는 최초 선임 시 2 년 이내, 연임 시 1 년 이내로 하되,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 년 이상으로 한다.
- ⑤ 임원의 연임기준은 신규 선임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적용한다.

제25조(임원의 퇴임 등)

① 정관 및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하며 제 4 호 및 제 5 호의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.

1. 임기 만료

2. 사직원 제출

3. 회사 인사규정 상 당연퇴직 사유

4. 회사 인사규정 상 징계면직사유에 해당하여 면직되는 경우

5. 기타 임원으로서의 신분유지 및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

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24 조 제 3 항의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,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6조(승계 계획)

회사는 대표이사 등의 궐위 시 업무대행 및 승계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인 인재 검토를 통하여 승계 계획을 수립하며, 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. 업무대행 및 승계가 결정된 각 후보자는 개별 분석 및 역량 검토에 따라 전략적인 개별 육성계획을 수립 및 실행한다.

제 4 절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

제27조(임원에 대한 교육)

① 임원은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에서 정한 집합 또는 사이버 과정 등 필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임원 중 선발된 자에 한하여 외부위탁 파견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28조(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)

회사는 매년 임원후보자 중 선발된 인원내 대하여 사내 또는 사외 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,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연수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.

제 5 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

제29조(임원 성과평가)

- ① 임원(사외이사, 감사위원,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, 이하 본 절에서 같다)에 대한 성과 평가는 년 1 회 실시하며, 해당 평가 결과는 성과급의 지급 및 연임 결정 등에 반영되도록 한다
- ② 성과평가의 대상, 절차 및 기준, 성과급 등 보상의 체계 등은 임원의 직급과 담당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수위원회에서 정한다.
-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.

제30조(임원의 보수)

-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구분한다.
- ② 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제 29 조의 성과 평가 결과 등에 따르며,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지급액은 보수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③ 임원의 보수 중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비율, 성과급 중 이연되는 비율 및 이연기간, 지급방식 등은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직무의 특성, 업무책임의 정도, 업무의 투자성 및 존속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 5 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

제 1 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

제31조(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)

-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또는 관련 내부규정(이하 "경영승계 계획 등")을 수립하고 운영한다.
- ② 제 1 항의 경영승계 계획 등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 - 1. 최고경영자의 최소한의 자격요건
 - 2.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
 - 3.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
 - 4.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
 - 5.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행자 선정, 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
 - 6. 그 밖에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이사회는 위 경영승계 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,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④ 이사회는 제 1 항의 경영승계 계획 등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한다.

제32조(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)

- 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시될 수 있다.
 - 1. 임기 만료
 - 2. 중도 사임
 - 3.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제재나 기타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
 - 4. 형벌 등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
 - 5. 사망,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유고 상황으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②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 1 항의 경영승계절차 개시 시점부터 최단시일 내에 이 규범에 따라 최고경영자를 선임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최고경영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에 한한다.

③ 불가피한 사유로 경영승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, 회사 운영 및 향후 최고 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한다.

제33조(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)

① 이사회는 이 규범 제 32 조 제 1 항의 경영승계 사유 중 비상 상황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갑작스런 최고경영자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의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 규범에 의거하여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진행하되,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.

제 2 절 최고경영자의 자격

제34조(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)

① 최고경영자는 지배구조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, 필요 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.

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,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,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.

제 3 절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

제35조(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, 자격검증 및 관리 방법)

-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발한다.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시 주주,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.
-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대해 매년 검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 4 절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

제36조(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)

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,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.

1.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
2.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
3.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
4.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
5.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
6.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
7.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
제 5 절 책임경영체제 확립

제37조(책임경영체제 확립)

- ① 회사의 최고 경영자의 임기는 제 9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라정하며, 그 선임 및 퇴임 관련 사항은 제 9 조 및 제 10 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- ②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최고경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③ 최고경영자의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는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

제 1 조(시행일)

이 규범은 201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 및 적용례)

이 규범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상의 적용례, 경과조치 등에 따라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시행일자 및 적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.